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3-61
------------	-------

제출년월일 : 2023. 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험 가입 대상,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3조~제4조)

다.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5조~제6조)

라.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7조~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3. 16. ~ 4. 5.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제7회 서울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2023.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

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등)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제5조(보험료 납부)
- 나. 수입발생 요인 :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3. 1. ~ 2027. 12.(60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시비보조금	7,343	-	-	-	-	7,343
	구비보조금	9,342	17,185	18,685	20,185	21,685	87,082
	소계(b)	16,685	17,185	18,685	20,185	21,685	94,425
□총비용(b-a)		16,685	17,185	18,685	20,185	21,685	94,425

- 비용 : 보험료 및 홍보비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보조금 지원(2023년 시비 50% 지원 예정, 2024년 이후 시비 지원 여부 미정)

5. 덧붙이는 의견 : 시비 지원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김문찬
연락처	02-3153-1684